

서울특별시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861
----------	-----

2019년 9월 6일
보건복지위원회

I.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년 8월 7일 오현정 의원 대표발의
2. 회부일자 : 2019년 8월 13일
3. 상정일자 : 제289회 정례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2019년 9월 2일 상정·의결(원안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오현정 의원)

1. 제안이유

- 가. 아파도 쉬지 못하는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자들의 입원치료에 대한 일실손해액보장을 통해 입원치료기간 동안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적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제안된 “서울형 유급병가” 제도의 시행을 명확히 하고자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으로 변경하고자 함.

나. 비정규직,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의료보장제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행정 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해 지원 대상자를 적절하게 선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함.

나. 제도의 명확한 시행을 위해 용어를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으로 변경함
(안 제1조, 제2조제1호, 제3조제2항, 제5조, 제7조제2호~제3호).

다.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의 지원대상자의 적정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제2항~제3항).

라.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자문위원회 설치, 기능,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제8조제1항, 제8조제3항~제6항)

마.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자문위원회 위원장 등의 직무를 규정함(안 제10조제4항)

바.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자문위원회 위원의 해촉을 규정함(안 제12조제1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사회보장기본법」, 「전자정부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참조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참조

Ⅲ. 검토보고의 요지(수석전문위원 이문성)

1 개정안의 취지

- 개정안은 아파도 쉬지 못하는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자들의 입원치료에 대한 일실손해액보장을 통해 입원치료기간 동안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적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제안된 “서울형 유급병가” 제도의 시행을 명확히 하고자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으로 조례의 제명 및 제도명을 변경하고 비정규직,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의료보장제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행정 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해 지원 대상자를 적절하게 선정하고자 제안되었음.

2 개정안의 주요내용 검토

가. 조례의 제명 변경과 관련하여

-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제도는 영세자영업자 등에게 질병치료를 위한 입원이나 건강검진을 위해 병원에 내원하는 경우 해당 일수의 일실손해액의 일부를 보장해 주는 제도로 사회보장급여의 하나로 이해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는 경우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사회보장위원회에 신설·변경 협의를 해야 하며 이 결과를 토대로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 할 수 있음.

- 사회보장위원회는 공문[사회보장조정과-4849]을 통해 유급병가제도에 대한 신설협의를 완료하였음. 다만 아래와 같은 검토의견을 제시한 바 있음.

- 근로기준법 상의 고용 보호를 받고 있지 못한 저소득 비정규직 및 자영업자의 소득보전 및 건강권을 부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타당성이 인정됨
- 기존 제도와의 관계에서 유사급여 대상자(기초수급자, 긴급복지, 실업급여, 산재보험 등)를 제외하고 있어 중복 지원의 문제도 없음
- 다만, 시범사업 성격을 가지고 있고, 1년 미만 정규직 근로자의 유급휴가가 11일인 점을 감안하여 지원기간 등을 조정할 것을 권고
 - * 시범사업 성격이므로 시행 후 이용추이 등 분석 평가 필요

< 권고 사항 >

- (지원기간) 사업 초기인 만큼 지원기간을 근로기준법상(제60조)의 1년 미만 연차유급휴가 기간을 준용(최대 11일, 건강검진 포함)
- (전달체계) 본 사업의 목적이 생계가 어려운 대상자에 대한 소득보전사업으로 보건소 보다는 읍면동을 중심으로 전달체계를 운영하고,
- 저소득 근로자 등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에 맞는 사업명(예: 유급휴가지원 등)으로 변경할 것을 권고

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과 관련

-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¹⁾에 따라 행정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정보를 공유하여 유급병가 신청자로 하여금 행정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제안되었음.
- 이에 따라 행정정보가 공동이용이 가능하다면 서울형 유급병가를 신청하는 데 필요한 행정서류 9종 중 6종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제공되어 관서 등에서도 불필요한 부담이 작아지며 효율적인 행정이 가능할 것으로 여겨짐.

-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 구비서류 9종중 6종
 - 주민등록표 등·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검진결과통보서,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 사업자등록증명, 입금계좌확인정보(신청인 통장사본)
-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 제외: 3종
 - 가족관계증명서(대법원 법원행정처: 행정정보 승인 불가), 가족관계 단절 사유서(해당자), 임대차 계약서(해당자)

3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제도 운영 관련

가. 서울형 유급병가제도 수급 현황

- 서울형 유급병가제도가 2019년 6월 시행되었으나 홍보의 부족 또

1) 제36조(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수집·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필요로 하는 다른 행정기관등과 공동으로 이용하여야 하며, 다른 행정기관등으로부터 신뢰할 수 있는 행정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같은 내용의 정보를 따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는 제도에 대한 시민의 인식 부족 등으로 인해 지난 3개월간 적절하게 운영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임.

- 지난 3개월 동안 실제로 급여를 지급받은 사람은 4명에 불과한 상황으로 유급병가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있다고 할 수 있음.
- 이에 행정정보의 공동이용등을 통해 신청 및 수급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면 이에 대한 대책이 될 수 있음. 그러나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제도의 수급요건 완화 등도 일부 고려가 필요한 상황으로 여겨짐.

구 분	신 청(단위:건)				지 급	
	계	6월	7월	8월	건수(단위:건)	금 액(단위:원)
계	65	11	42	12	4	2,110,680
종 로	2	2	0	0		
중 구	0	0	0	0		
용 산	1	0	1	0		
성 동	3	0	3	0		
광 진	1	0	1	0		
동대문	3	1	2	1	1	81,180
중 랑	5	1	4	0	1	811,800
성 북	0	0	0	0		
강 북	3	1	2	1	1	405,900
도 봉	5	0	5	0		
노 원	3	0	3	0		
은 평	3	1	2	1		
서대문	5	0	5	0		
마 포	2	1	1	1		
양 천	2	0	2	0		
강 서	3	0	3	5		
구 로	1	0	1	2		
금 천	2	2	0	0		
영등포	0	0	0	0		
동 작	0	0	0	0		
관 약	2	0	2	0		
서 초	1	0	1	0		
강 남	0	0	0	0		
송 파	4	1	3	1	1	811,800
강 동	2	1	1	0		

나. 유급병가 심의위원회의 운영과 관련

- 동 조례 개정안에는 유급병가지원 자문위원회를 10명에서 20명으로 확대 운영하는 안을 제안하였음. 유급병가지원 자문위원회는 유급병가지원제도와 관련한 기본계획의 심의, 지침의 개발 및 개정, 그 밖에 유급병가지원에 대한 사항을 조정할 수 있는 자문기구로 추후 유급병가지원제도의 실행실적에 따라 급여조건의 변경 등을 논의할 수 있는 기구로 여겨짐.
- 민간전문가의 참여를 보장하고 독려하는 의미로 평가할 수 있음.

4 종합의견

-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행정정보의 공동활용, 제도명의 정비, 유급병가 자문위원회의 확대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모두 개정안에 있어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임.
- 그러나 “구슬이 서 말이어도 껴어야 보배” 라는 속담처럼, 서울형 유급병가제도의 수급실적이 떨어지는 점에 대하여 제도가 가진 본래의 목적이 달성 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집행의지가 중요할 것이라 할 것임.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원안가결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현정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861
----------	-----

발의년월일 : 2019년 8월 7일
발 의 자 : 오현정, 박기재, 권영희,
이정인, 홍성룡, 김정태,
김호평, 강동길, 권순선,
이병도, 이승미, 송재혁,
김재형, 신정호, 김제리,
한기영, 이광성, 송정빈,
이동현, 이상훈, 김상훈,
김혜련, 김용연, 봉양순 의원 (24명)

1. 제안이유

- 아파도 쉬지 못하는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자들의 입원치료에 대한 일
실손해액보장을 통해 입원치료기간 동안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
도록 하여 적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제안된 “서울형 유급
병가” 제도의 시행을 명확히 하고자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으로 변경하
고자 함.
- 비정규직,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의료보장제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행정 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해 지원 대상자를 적절하게 선정하고자 조
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 가. “서울특별시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함.
- 나. 제도의 명확한 시행을 위해 용어를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으로 변경함

- (안 제1조, 제2조제1호, 제3조제2항, 제5조, 제7조제2호~제3호).
- 다.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의 지원대상자의 적정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제2항~제3항).
- 라.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자문위원회 설치, 기능,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7조, 제8조제1항, 제8조제3항~제6항)
- 마.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자문위원회 위원장 등의 직무를 규정함(안 제10조 제4항)
- 바.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자문위원회 위원의 해촉을 규정함(안 제12조제1호)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사회보장기본법」, 「전자정부법」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참조
-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참조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 제명 중 “유급병가 지원”을 “유급병가지원”으로 한다.

제1조 중 “「서울형 유급병가」”를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서울형 유급병가”란”을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이란”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서울형 유급병가”를”을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을”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서울형 유급병가 기본계획의 수립)”을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기본계획의 수립)”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유급병가의”를 “유급병가지원”으로 한다.

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지원 대상자의 적정 여부는 제출된 지원 신청서의 검토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 결정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직접 첨부하여 주민센터장의 장, 보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표 등·초본(주소이력포함)

2.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건강검진결과통보서
3.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
4. 사업자등록증명
5. 입금계좌확인정보

제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서울특별시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대상자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의 범위, 지원방법 등에 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의 제목“(유급병가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을“(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자문위원회 설치 및 기능)”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호 중 “유급병가”를 각각 “유급병가지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유급병가”를 “유급병가지원”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10명이내”를 “20명이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보건의료 정책과장은”을 “시민건강국장을”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팀장이 된다.

제8조제6항(중전의 제5항) 중 “심의위원회”를 “위원회”로 한다.

제10조의 제목“(위원장의 직무)”를“(위원장 등의 직무)”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간사는 자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2조제1호 중 “심신장애”를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 서울형 <u>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시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서울형 유급병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서울형 유급병가"란 근로소득이 있는 시민이 정신적·육체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검진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소득상실이 생계에 위협이 되는 상황을 초래할 때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금전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를 말한다.</p> <p>2. (생략)</p> <p>제3조(시장의 책무) ① (생략)</p> <p>② 시장은 "서울형 유급병가"를</p>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 서울형 <u>유급병가지원에 관한 조례</u></p> <p>제1조(목적) ----- ----- -----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 -----.</p> <p>제2조(정의) ----- -----.</p> <p>1.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이란</p> <p>2. (현행과 같음)</p> <p>제3조(시장의 책무) ① (현행과 같음)</p> <p>② ----- "서울형 유급병가지원</p>

타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의 각 호에서 제시된 제도와 연계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서울형 유급병가 기본계획의 수립) 시장은 서울형 유급병가의 시행을 위하여 매년 말까지 다음연도의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며, 지원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1. ~ 3. (생략)

제6조(지원신청 및 지원결정 등)

- ① (생략)
- ② 지원 대상자의 적정 여부는 제출된 지원 신청서의 검토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의 확인을 거쳐 주소지 관할 보건소장이 결정한다. 다만 지원 대상자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의 범위, 지원방법 등에 대하여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을 -----

-----.

제5조(서울형 유급병가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 유급병가지원 -----

-----.

- 1. ~ 3. (현행과 같음)

제6조(지원신청 및 지원결정 등)

- ① (현행과 같음)
- ② 지원 대상자의 적정 여부는 제출된 지원 신청서의 검토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 결정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직접 첨부하여 주민센터장의 장, 보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주민등록표 등·초본(주소이력포함)
- 2.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신 설>

제7조(유급병가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유급병가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생략)
2. 서울형 유급병가 지침 개발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서울형 유급병가 사업 조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생략)
- ③ 위원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1인을 포함해서 사회복지·건강·의료 관련 전

건강검진결과통보서

3.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

4. 사업자등록증명

5. 입금계좌확인정보

③ 서울특별시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대상자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의 범위, 지원방법 등에 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자문위원회 설치 및 기능) -----

--- 유급병가지원 -----
-----.

1. (현행과 같음)
2. ---- 유급병가지원 -----

3. ----- 유급병가지원 -----

제8조(구성) ① -----

20명이내-----

- ② (현행과 같음)
- ③ -----

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보건의료정책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신 설>

④ (생 략)

⑤ 심의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 ③ (생 략)

<신 설>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 4. (생 략)

----- 시민건강국
장을 -----

--.

④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팀장이 된다.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⑥ 위원회-----

--.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간사는 자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

-----.

1. 장기간의 심신쇠약-----
2. ~ 4.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서울형 유급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서울형 유급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조(구성)제1항을 개정함에 따라 서울특별시 유급평가지원 자문위원회 운영비용 추가 발생
 - * 같은 조례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제1호, 제3조(시장의 책무)제2항, 제5조(서울형 유급평가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제7조(유급평가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8조(구성)제6항, 제12조(위원의 해촉)의 경우 단순히 용어를 변경하는 것으로 별도의 비용 발생치 않아 비용추계 제외
 - * 같은 조례안 제6조(지원신청 및 지원결정 등)제2항 및 제8조(구성)제3항의 개정, 제8조(구성)제4항 및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제4항의 신설에 따른 별도의 비용 발생치 않아 비용추계 제외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제3조제1항제1호)

나. 추계결과 ≒ 60,000천원

- 예상되는 비용이 5년동안 60,000천원으로 연평균 12,000천원임
- 추계의 전제
 - 비용추계기간 이후에도 비용발생
 - 물가상승률 미반영
 - 서울형 유급평가 자문위원회는 이미 운영되고 있으므로, 10명의 위원이 추가로 위촉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비용추계하는 것으로 전제

○ 상세 비용추계 결과

(단위 : 천원)

구분		연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합계
		세입	-	-	-	-	-	-
	소계(a)	-	-	-	-	-	-	
세출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자문위원회 운영비 추가비용 (조례안 제8조제1항)	12,000	12,000	12,000	12,000	12,000	60,000	
	소계(b)	12,000	12,000	12,000	12,000	12,000	60,000	
□ 총 비용(b-a)		12,000	12,000	12,000	12,000	12,000	60,000	

○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자문위원회 운영비 추가비용(≒60,000천원)

-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자문위원회 운영비 추가비용

$$= \sum_{i=1}^5 (\text{연간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자문위원회 운영비 추가비용})_i$$

※ i = 비용추계 연차(2020년 ~ 2024년)

- 연간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자문위원회 운영비 추가비용

$$= \text{회의 참석수당} + \text{위원회 운영 경비}$$

$$= (150,000\text{원} * 10\text{명} * 6\text{회}) + (500,000\text{원} * 6\text{회})$$

$$= 9,000,000\text{원} + 3,000,000\text{원}$$

$$= 12,000,000\text{원}$$

※ 참고) 서울형 유급병가 자문운영회 구성·운영 계획(2019년, 서울시 질병관리과)

- 위원 10명(시의원 포함 위촉직 9명, 당연직 1명)

- 정기회의 분기별 1회 운영(수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남승우

정책조사팀장 여차민

주 무 관 채소영

☎ 02-2180-7944

e-mail : liz1998@seoul.go.kr